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자 원 순 환 기 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한정애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2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왕겨 및 쌀겨는 쌀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련 규제를 받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료·비료 외에도 철강 보온재, 화장품 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재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, 왕겨 및 쌀겨의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다양한 용도 및 유통 방법을 인정함으로써 폭넓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,

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소각·매립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기준 및 방법으로 매립되는 사업장 비배출계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분부담금 산정 시 생활폐기물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말한다”를 “말하며, 제6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“제6호까지”를 “제8호까지(제7호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왕겨 및 쌀겨

별표 6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(가연성폐기물에 한정한다)을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으로 매립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매립 요율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순환자원의 인정기준)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 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	제3조(순환자원의 인정기준) 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유기성 폐기물(고형물 중 유 기성 물질의 함유량이 40퍼센 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)은 다 음 각 목에 따른 용도로만 사 용될 것	6. ----- ----- ----- 말하며, 제6조 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----- -----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7.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(수출 은 제외한다)될 것. 다만, 제6 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 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.	7. ----- ----- -----. ----- 제8호까지 (제7호는 제외한다)----- -----.
8.·9. (생 략)	8.·9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) ① 법 제9조제7 항에서 “폐지, 폐금속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” 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	제6조(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) ① ----- ----- ----- -----

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. 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8. 왕겨 및 쌀겨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349